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사·대학원 연계과정 운영 지침

제정 2008. 6. 19.

개정 2013. 7. 24.

개정 2019. 9. 4.

개정 2022. 3. 10.

개정 2023. 11. 15.

개정 2026. 4. 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학사·대학원 연계과정 운영 규정」에 의해 공과대학 학사·대학원 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공과대학 연계과정은 다음 각 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연계하여 설치·운영한다.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사과정

2.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사과정(단, 연계대상 대학원 과정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함)

② 연계과정은 학문의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과(부)·전공(이하 “학과(부)”라 한다) 단위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③ 대학 내 학과(부), 협동과정 또는 대학(원) 상호간에 연계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은 선발인원, 선발방법, 과정이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장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상호간 연계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이 주관하여 해당 학과(부) 또는 대학(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수업연한) 학사·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 이상, 학사·석사·박사통합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8년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학사학위과정 : 6개월(1개 학기)

2. 석사학위과정 : 1년(2개 학기)

3. 석사·박사통합과정 : 1년(2개 학기)

제4조(지원자격 및 절차) ① 연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연계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부)에 소속되거나, 해당 학과(부)의 전공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 중인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4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54학점 이상을 취득. 단, 졸업학기에는 지원 불가
2.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성적 평점평균 3.3 이상 또는 직전 2개 학기의 성적 평점 평균 3.5 이상 취득

3.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부)장의 추천

②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선발 학과(부)에서 정한 소정의 지원서와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인원) 연계과정의 선발인원은 대학원 과정 입학정원의 40% 이내로 하되, 이중 첨단융합학부 학사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원 과정의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한다. 구체적인 선발인원은 각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이 정한다.

제6조(선발시기 및 선발방법) ① 연계과정 이수 예정자(이하 “연계과정 학생”이라 한다)는 매 학기 1회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일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형방법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재학 중 성적, 추천서, 연구활동계획서와 각 학과(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평가한다.

③ 학장은 매 학기 말까지 연계과정 학생 선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수강신청 및 학점이수) ① 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재학 시 매 학기 수강신청을 최대 24학점까지 할 수 있다.

② 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에서 대학원 과정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대학원 전공 교과목을 12학점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제8조(연계과정 운영 등) ① 각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은 연계과정 첫 학기 초에 연계과정의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② 연계과정 학생은 매학기 연구활동계획서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해당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계과정 학생으로서 연계과정을 운영하는 학사과정의 학과(부)에 소속한 학생은 타 학과(부)로 전과를 할 수 없으며, 해당 학과(부)의 전공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해당 전공의 이수를 포기할 수 없다.

④ 연계과정 학생은 선발된 연계과정의 대학원 과정의 학과(부)를 변경할 수 없다.

- ⑤ 대학(원) 또는 학과(부)의 장(또는 전공주임)은 연계과정 학생을 위한 학사·대학원 공통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⑥ 연계과정 학생으로 대학원 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과(부)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⑦ 연계과정 학생으로 대학원 과정에서 각 학위과정 별로 정한 등록 및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해당 학위과정의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과정탈락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연계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이하 “포기자”라 한다)는 매학기 말까지 포기원을 해당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계과정 중 석사과정 탈락자 및 포기자(대학원 입학 포기자 포함)는 학칙 제88조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 ③ 연계과정 중 석사·박사통합과정 탈락자 및 포기자는 「서울대학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다.

제10조(학사과정 졸업 자격 및 대학원 입학) ① 연계과정 학생의 학사과정 졸업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8개 학기 이내에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고, 전체 성적 평점평균 3.3 이상 취득
- 2. 해당 학기에 대학원 등록
- 3. 연구활동계획서 1회 이상 제출
- ② 제1항의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한 연계과정 학생은 졸업학기의 전학기 종료 후 학사과정 운영대학에 졸업신청서를 제출하고, 공과대학원에 대학원 입학지원서와 졸업신청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여야 한다.

제11조(연계과정 학생에 대한 특례) ① 연계과정을 운영하는 학사과정의 졸업논문(또는 이와 동등한 실적심사 등)을 학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 ② 연계과정의 대학원 과정 입학시험을 면제(무시험 특별전형)한다.
- ③ 연계과정의 대학원 과정 입학시 등록금 중 입학금을 면제한다.
- ④ 학사과정 재학 중 대학원의 각종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0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9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지침은 2024학년도 선발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